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민석 의원)

의안 번호	20-9
----------	------

발의년월일: 2020. 1. .

발 의 자: 이민석, 김성희, 김영미,
신종갑, 조영덕, 채우진, 한일용

1. 일부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의사상자 등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포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1조 외)

연번	자치법규 명	개정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신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항제1호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문 내용 일부 개정 (별표 1. 제7호) -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등이”로 개정 - 조문신설 (별표 1. 제7호)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3.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0. 1. 30. ~ 2020. 2. 4.

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제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등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 사. (생략) <u><신설></u> 2. ·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 ----- ----. 1.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 6.(생 략)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8. ~ 24.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 6.(현행과 같음) 7. ----- 국가유공자 등이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8. ~ 2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88호, 2020. 1. 2., 제정]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8조(사용료)

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박수
연 락 처	02-3153-98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유달리
연 락 처	02-3153-9664